

●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-82호

「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 방식의 가입연령 기준」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24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「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농지연금 종신형 가입연령이 인하(만 65세 → 만 60세, '22.2.18)됨에 따라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인하 및 가입자 수급기간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농지연금 상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 추가 및 가입연령 기준 인하(안 제3조)

- 현행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(5년, 10년, 15년형) 확대를 위해 20년형을 추가하여 이른 나이(만 68세 → 만 63세)에도 농업인의 가계 상황에 따라 기간형 지원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

* 기간형 가입연령은 기대수명(83세)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현재 5년형(만 78세 이상 가입), 10년형(만 73세), 15년형(만 68세)으로 운영 중

나. 재검토기한 현행화(안 제4조)

-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고시의 재검토 기간을 개정 기준 재검토 기한으로 수정 반영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(농지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kje38940@korea.kr

2) 주소 : (우 30110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
5동,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

3) 팩스 : 044-868-0523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(전화 044-201-1734, 팩스

044-868-052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
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(<https://www.mafra.go.kr>) - 국민소통 - 법령
정보 - 입법·행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1]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개	정	사	유	
제3조(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) 영 제 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(“기간형 지원방식”이라 한다)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다.		제3조(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	○ 농지연금 기간형 상품을 추가하여 농지연금가입 가능 연령을 낮추기 위한 개정 * (현행) 기간형 가입연령은 기대수명(83세)을 기준으로 설정되며, 5년형(만78세이상), 10년형(만73세), 15년형(만68세) 운영중 (개선) 20년형(만63세) 가입기준 추가				
기간	5년형	10년형	15년형		기간	5년형	10년형	15년형	20년형
가입	만 78세	만 73세	만 68세		가입	만 78세	만 73세	만 68세	만 63세
연령	이상	이상	이상		연령	이상	이상	이상	이상
제4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	제4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7월 1일----- ----- 6월 30일----- ----- -----.			○ 해당 고시의 재검토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재검토기한을 현행화하기 위한 개정				

[붙임 2] 개정고시 전문

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

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개정 2023.3.00.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- 호)

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영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(“기간형 지원방식”이라 한다)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다.

기간	5년형	10년형	15년형	20년형
가입연령	만 78세 이상	만 73세 이상	만 68세 이상	만 63세 이상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